

- 2026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참여자 모집 공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군산시장
김제시장
남원시장
무주군수
부안군수
순창군수
익산시장
임실군수
장수군수
정읍시장
진안군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분야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창업의 지속가능성 연계
-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인구소멸지역 대응

□ 지원내용

- 교육: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필수 참여)
- 사업화 지원: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급(팀별13.5백만원), 컨설팅

II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6. 2. 23.(월) ~ 3. 15.(일)

□ 모집대상

- 지역별 특화분야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 ※타 시·군에 소재한 창업기업이나 거주자의 경우 협약일 전까지 해당 시·군 내로 사업장 등록 완료 또는 거주지 이전 필수(사업자 등록일, 주민등록등본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혁신가(각 지자체별 청년 나이 조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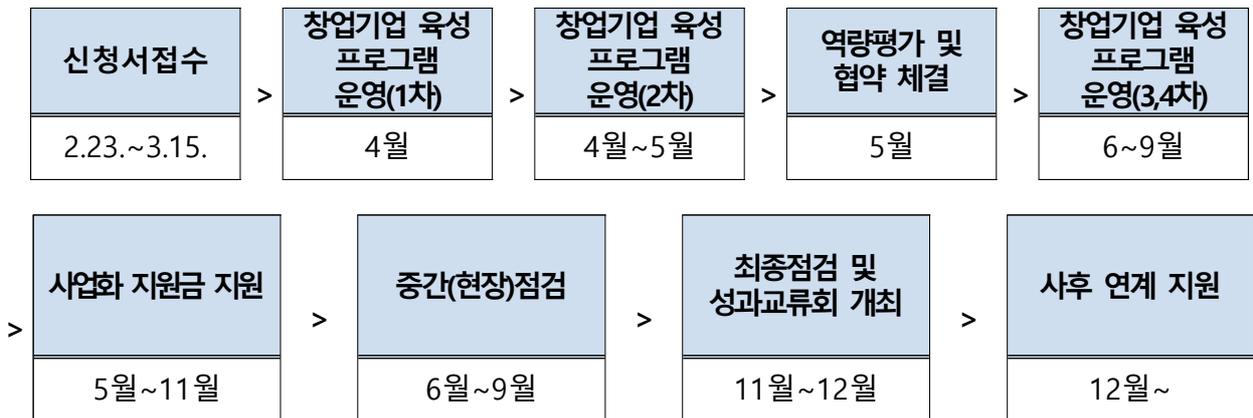
| 지자체 | 사업대상 자격요건(2026.1.1.기준) |
|-----|---|
| 고창군 | 18세~45세 이하(1981.1.1.-2008.12.31.) |
| 군산시 | 만 18세~39세 이하(1986.1.2.-2008.1.1.) |
| 김제시 | 18세~39세 이하(1986.1.1.-2007.12.31.) *2025.12.31. 기준 |
| 남원시 | 19세~45세 이하(1981.1.1.-2007.12.31.) |
| 무주군 | 만 18세~49세 이하(1976.1.1.-2008.1.1.) |
| 부안군 | 18세~45세 이하(1981.1.1.-2008.12.31.) |
| 순창군 | 18세~49세(1976.1.1.-2007.12.31.) |
| 익산시 | 18세~39세 이하(1986.1.1.-2007.12.31.) *2025.12.31. 기준 |
| 임실군 | 만 19세~45세 이하(1980.1.2.-2007.1.1.) |
| 장수군 | 만 19세~49세 이하(1976.1.1.-2007.1.1.) |
| 정읍시 | 18세~45세 이하(1981.1.1.-2008.12.31.) |
| 진안군 | 만 18세~45세 이하(1980.1.1.-2008.1.1.) |

-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2023. 1. 1. 이후 창업기업)
※[참고1] 창업기업 확인기준 확인
- 지자체별 특화분야 창업 아이디어 우선 선발
※[참고2] 지자체별 특화분야 확인
- 2025년 사업 참여팀 재참여 가능하나 전년도 사업 아이디어의 고도화 목적에 한함(전체 규모 10% 내외 선발)

□ 모집규모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자격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시제품 제작 지원금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1~2차 수료 후 역량평가를 통해 선정된 팀에 한해 지원(총 38개팀 내외)

□ 추진일정



※상기일정은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접수처: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접수
- 신청양식: 전북특별자치도, 12개 시·군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다운로드
- 문의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25, 8944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여부 | 비고 |
|----|------------------------------|--|------|------------|
| 1 | ■ 참가신청서(창업아이템 요약서 포함) 1부 | | 필수 |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 |
| 구분 | 증빙서류 | | 필수여부 | 비고 |
| 1 | ■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필수 | - |
| 2 | ■ 개인 |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 | 붙임 3 참고 |
| | ■ 법인 |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 법인등기부등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 |
| 3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붙임 1, 2 참고 |
| 4 |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 | | 선택 | 해당자 |
| 5 | ■ 기타자료(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 | 선택 | 해당자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자의 서류는 자체 파괴
모든 제출·증빙 서류는 각 파일명으로 저장 후 압축하여 첨부

□ **모집 제외대상**

-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는 자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교육지원

□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필수 참여

- 모집대상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 참여대상자 안내 예정
 - 수료기준
 - 교육 1~2차 프로그램 참여율 70% 내외 달성 시 역량평가 대상
 - * 육성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역량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역량평가 후 최종 38팀 내외 선정 예정
 - 교육내용
 - 1) [1차] 아이디어 고도화
 -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MVP 솔루션 설계
 - PBL(Problem Based Learning) 기반 교육을 통한 실전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예비·초기·성장 단계별 사업 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중간 미션] 현장 검증 브릿지
 -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잠재 고객 인터뷰 진행
 - 미션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 수치화 및 2차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 3) [2차] 사업화 집중 교육
 - 성장 단계별 맞춤 분반 : 예비·초기·성장 단계별 사업계획서 기획 및 실습
 - PSST 기반 고도화 : 중간 미션에서 얻은 현장 데이터를 반영하여 문제 인식부터 성장전략까지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을 통한 피드백 제공
 - 로컬, 바이오, IT 등 사업 분야에 따른 전문 멘토 배정을 통하여 각 사업에 맞는 분야별 실습 프로그램 진행
 - 4) 3차 [성과 점검 및 솔루션 제공]
 - 사업 추진 현황 중간 점검을 통한 로드맵 재설정 및 보완점 도출
 - 그룹 단위 집중 자문을 통한 타 기업 사례 벤치마킹 및 실전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5) 4차 [성과 고도화 및 네트워킹]
 - 수정 사업계획서 심층 진단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금 활용 교육
 - 우수 창업기업 사례 공유, 고도화 교육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사업화 지원

□ 평가 및 선정

- 선정규모: 총 38팀 내외
- 평가일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①사업계획서 제출 | > | ②서면평가 | > | ③발표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합격자 대상) | > | ④협약 체결 |
| ~ 4월 말 | | 5월 중 | | 5월 중 | | 5월~11월 |

- 선정방법: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1~2차 수료 → 역량평가를 통한 최종 참여팀 선정
※역량(발표)평가 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대표자의 발표가 원칙
- 평가대상
 - 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참여팀
 - ① 모집대상 요건 충족자
 - ②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1~2차 수료자(70% 내외)
 - ③ 사업계획서 제출자
- 역량평가기준

| 평가항목 (100)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
| 기업가마인드 (30) | ① 기업가 마인드 및 사업추진 의지 | 15 |
| | ②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윤리적 소양 및 신뢰성 | 15 |
| 아이템차별성 (30) | ③ 지역 특화분야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 혁신성 | 15 |
| | ④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화 가능성 | 15 |
| 구체화가능성 (30) | ⑤ 사업계획 및 아이템 실현 가능성 | 15 |
| | ⑥ 시장성 및 시제품 도출 기대효과 | 15 |
| 프로그램 참여도 (10) | ⑦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 5 |
| | ⑧ 현장 검증 브릿지 미션 수행 | 5 |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사업화 지원금 : 지역 특화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 기반 사업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팀별 13.5백만원) 지원
- 지원규모 : 총 38개팀 내외(팀별 13.5백만원)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 고창 | 군산 | 김제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익산 | 임실 | 장수 | 정읍 | 진안 | 계 |
|-------|----|----|----|----|----|----|----|----|----|----|----|----|----|
| 계획(팀) | 6 | 3 | 4 | 3 | 3 | 5 | 1 | 3 | 2 | 2 | 3 | 3 | 38 |

- 지원기간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참여팀 협약기간 내(5월~11월)

○ 지원분야

| 구분 | 비목 | 비목 정의 |
|----|--------|--|
| 1 |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비용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
| 2 | 홍보비 | 창업기업 및 시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비목 활용 금액은 3백만원에 한함 |
| 3 | 장비임차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임차하는 비용 |
| 4 | 지식재산권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 5 | 회계감사비 | 참여기업 회계정산비용 |

□ 중간점검 및 컨설팅

○ 중간점검(6월~9월)

- 중간점검 보고서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 사업비 활용 유의사항 및 서류 작성 안내 등 행정 지원
-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 컨설팅 *컨설팅 분야 : 창업, 마케팅, 투자, 기술, 유통, 생산, 세무, 노무 등

- 그룹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전문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

□ 사후 연계 지원

○ 분기별 센터 자체 성과조사를 통한 참여팀 현황 점검

○ LIPS 추천 기업으로 육성 및 글로컬(Global) 성장 기회 제공

*LIPS: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 및 추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V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참고1] 창업기업 확인 기준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 | 이종 | 창 업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
| | 이종 | 창 업 | |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참고2] 지자체별 특화 분야

| 지자체 | 특화분야 |
|-----|--------------------------------|
| 고창군 | 관광, 농·생명(식품) |
| 군산시 | 관광, 농·생명 |
| 김제시 | 관광, 농·생명(식품) |
| 남원시 | 모든 산업분야 |
| 무주군 | 관광, 농·생명(식품) |
| 부안군 | 관광, 농·생명(식품), 푸드트럭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
| 순창군 | 농·생명 |
| 익산시 | 바이오·헬스, 식품, ICT |
| 임실군 | 관광, 농·생명(반려동물, 식품) |
| 장수군 | 관광, 농·생명(식품) |
| 정읍시 | 관광, 농·생명, 식품 |
| 진안군 | 관광, 농·생명(식품) |

[붙임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국세청)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붙임2]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민원24)

1. 정부24포털사이트 접속(www.gov.kr)



2.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정보 작성 후 신청 *증명서 사용 목적: 은행 제출

통합검색



"지방세납세증명"(으)로 검색한 결과, 총 54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붙임3] 사실증명원 발급방법(국세청)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3. 사실증명발급 신청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창업한 이력이 없는 자

기창업자 또는 폐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 1회 이상 창업이력이 있는 자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09:00 - 24:00 입니다.
-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기준, 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8시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발급하는 증명이므로 공공하산 사항은 세워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 민원사무명 | 발급신청 | 비유목적 | 납세자번호 입력구분 | 인증서 필요여부 |
|----------------------------------|------|--|-------------------------------------|----------|
| 사실증명(해남내역) | 신청하기 | 해남 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주력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신청하기 | 주력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신고사업예율) | 신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결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결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공통사업지내역) | 신청하기 |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신청하기 |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필요 |
|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개인용 : 주민등록번호 법인용 : 본점(지점)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합소) | 신청하기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 |
| 사실증명(전용계좌개설여부) | 신청하기 | 법인이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영업지해 대한 입증동의장보내역) | 신청하기 | 민청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사실증명(개발소비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신청하기 | 수출물품에 대한 개발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실증명(후사업자등록내역)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받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